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7.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6년 1월 30일, 복기왕의원 등 12인

나. 회부일자: 2026년 2월 2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3.11.)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2026.4.28.)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43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5.12.)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복기왕 의원)

최근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식품사막(지리적 요인 등으로 식료품을 구입하기 어려운 지역)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2020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3만 7,563개 행정리 가운데 식료품을 구입할 수 있는 점포가 없는 지역이 2만 7,609곳으로 약 73.5%에 이르고 있어 농촌지역 주민의 건강과 농촌 공동체 유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그런데 현행 법령과 제도는 그동안 주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건강과 관련된 지원사업이 중점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식품사막 확대로 식품접근성이 보장되지 않는 지역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농업·농촌 및 식품 관련 정책의 범위와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농촌지역 주민의 식품접근성 제고를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지역먹거리계획과 농촌지역 주민의 복지증진 등의 정책 수립·시행 시 식품접근성 제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농촌 공동체를 유지하고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3.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이정은 수석전문위원)

가. 식품접근성 정의 신설

개정안은 식품접근성 제고를 위한 의무·지원 등의 규정을 신설하기 위하여 현행법상의 정의규정에 ‘식품접근성’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

려는 것으로, 이후의 의무·지원 등의 규정을 수용하는 경우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

다만, 식품접근성의 정의에 따라 이후 개정안에 따른 지원대상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식품접근성을 어떠한 조건까지로 포함하여 정의할 것인지에 대한 엄밀한 논의가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세 건의 개정안에서는 식품접근성을 크게 신체적, 경제적 및 지리적 요인에 따른 조건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는 어떠한 개인이 ‘안전하고 신선하며 균형잡힌 식품’을 구입하지 못하는 사유를 ① 신체적 요인에 따라 이동이 불편하거나, ② 경제적 요인에 따라 구매력이 부족하거나, ③ 지리적 요인에 따라 생활권 내에서 이에 접근할 수 없기 때문으로 분류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임.

이 중 신체적 요인과 경제적 요인에 따른 조건은 동일한 생활권역 내에서도 각 개인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개인적 조건인 반면,

지리적 요인에 따른 조건은 산간·도서지역 등 지형적 특성으로 인하여 고립되거나, 인구감소 등 수요 부족으로 충분한 이윤을 확보할 수 없어 지역 내에 식료품점 등이 운영되지 않는 등의 경우로서, 해당 생활권역 내에 거주하는 자가 공유하는 사회적 조건이라 할 수 있음.

따라서, 식품접근성을 정의함에 있어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대상의 범위를 해당 생활권역 내의 지역주민이 공유하는 사회적 조건으로 인한 경우로 한정할 것인지, 그 외 개인적 조건으로 인한

경우까지 포함할 것인지를 선행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

나. 식품접근성 제고에 필요한 정책 또는 시책 마련 의무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① 임호선의원안은 현행법 제7조에 식품접근성 제고를 위한 시책 마련 의무를, ② 복기왕의원안은 현행법 제54조에 식품접근성 제고를 위한 정책 수립 및 시행 의무를 각각 추가하려는 것으로,

정책과정에서 식품접근성에 관한 고려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식품접근성 제고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만, 두 개정안은 식품접근성 제고라는 동일한 사항을 각각 ‘식품의 안정적 공급’과 ‘농촌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것으로 규정하여 서로 다른 조를 개정하고 있으므로, 식품접근성 제고가 둘 중 어느 목적에 보다 근접하여 어떠한 조를 개정할 것인지를 논의할 필요가 있음.

다. 식품접근성 제고를 위한 지원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식품사막 및 교통 접근성 취약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에서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이동장터”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으며,

이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원하면, 농협·협동조합·마을기업 등의 지역 공동체가 이동식 차량과 인력을 운영하

여 생필품을 판매하고 배달하는 구조로 이루어지고 있음.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식품접근성 제고를 위한 지원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현재 이루어지는 이동판매 및 배송 등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새로이 식품 판매시설의 운영지원 사업 등이 수행됨에 따라 식품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이 경우, 개정안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첫째, 지원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임호선의원안은 임의규정, 복기왕의원안은 의무규정 형식으로 규정의 차이가 있어, 식품접근성 제고를 위한 사업의 정책적 필요성에 따라 그 수준을 선택할 필요가 있음.

둘째, 임호선의원안 제23조의8제2항에서는 식품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실시할 수 있는 지원사업의 예시로 ‘식료품점 운영’과 ‘식료품 판매업체의 이동판매차·공동배송 운영’을 규정하고 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그런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식료품점이나 이동판매차 등을 운영하는 것을 실행하기 어려울 경우, 복기왕의원안과 같이 민간사업자의 운영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셋째, 임호선의원안은 복기왕의원안과 달리 ① 식품접근성 실태 등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고, ②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필

요한 지원사업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재 식품접근성에 관한 사항은 농림어업총조사에서 이루어지는 행정리별 판매·서비스시설 소재 현황조사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나, 그 외에는 식품접근성 제고를 위한 정책기반이 충분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임호선의원안에 따른 5년 주기 실태조사 제도를 수용할 경우 구체적인 실태조사 결과에 기초한 지원사업을 적시에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에서 필요할 것으로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윤준병)

개정안의 내용을 대안에 반영하고, 이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